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습스토킹범죄 신설 〉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86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달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11. 14.
3. 회 부 일: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반복적 성격을 띠며 단발적 행위보다는 동일 행위가 상습적으로 누적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8조의2(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2. 검토의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그 방법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음.

- 단순히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8조제1항)¹⁾,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특수스토킹범죄)

1)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제18조제2항).²⁾

□ 안 제18조의2는 제18조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상습범에 해당하는 상습스토킹범죄를 신설하고 있음.

○ 상습범은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가중처벌의 사유로 삼는 범죄유형으로,³⁾ 상습성 유무는 동종 전과, 범행의 동기·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⁴⁾

□ 따라서 안 제18조의2에 따르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기본적 스토킹 범죄의 유형에 따라 상습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이 달라지게 됨.

○ 단순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휴대스토킹범죄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임.

2)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킴.

4)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

구 분		기본 범죄	상습범
단 순 스토킹	구성요건	지속·반복적 스토킹	좌동 + <u>상습성</u>
	법정형	3년 이하↓ / 3,000만원↓	4년 6월 이하↓ / 4,500만원↓
흥기휴대 스토킹	구성요건	상동 + <u>흥기휴대</u>	좌동 + <u>상습성</u>
	법정형	5년 이하↓ / 5,000만원↓	7년 6월 이하↓ / 7,500만원↓

□ 범죄화와 그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스토킹범죄는 동일한 유형의 스토킹행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의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상습스토킹범죄의 상습성이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상습범의 구성요건인 ‘상습성’ 간 구별이 모호하고,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재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등 보완점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0